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10290

제안연월일: 2025. 4.

제 안 자 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 발의자	발의일	경 과
	(제출자)	(제출일)	
신에너지 및		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9차 전
재생에너지			
개발·이용·보급	이용선의원	2024.6.24.	체회의(2024.11.20.) 상정 후 제
촉진법			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
(제848호)			거쳐 소위회부
신에너지 및			계410회 구청(저기치) 제0회 저
재생에너지		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9차 전
개발·이용·보급	허영의원	2024.8.29.	체회의(2024.11.20.) 상정 후 제
촉진법			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
(제3333호)			거쳐 소위회부
신에너지 및		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9차 전
재생에너지			
개발·이용·보급	김소희의원	2024.9.5.	
촉진법			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
(제3670호)			거쳐 소위회부

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(2025.4.8.)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

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 주차장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 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의13 신설).

3. 부대의견

- 가.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
- 나.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

법률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13(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)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(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 - 2. 공공기관
 - 3.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 - 4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 - 5.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 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
 - 6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- ② 제1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 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영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 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	개 정 안
<신 설>	제12조의13(공영주차장의 신·재 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(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)을 설치·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·재 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. 공공기관 3.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 연기관 4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6호 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.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 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

출자한 법인

- 6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② 제1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
 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
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 로 정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설 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 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